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964호 2024. 5. 14.(화)</p>	
---	---	---

선 결	기관의 장

##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864호	거창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거창군 조례 제2865호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	17
거창군 조례 제2866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거창군 조례 제2867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거창군 조례 제2868호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3
거창군 조례 제2869호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3
거창군 조례 제2870호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63

##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394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7
거창군 규칙 제1395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69
거창군 규칙 제1396호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84
거창군 규칙 제1397호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89
거창군 규칙 제1398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	93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4-65호	거창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실행계획 (중대한)변경(2차) 고시 .....	96
------------------	---	----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4-738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복상면 음지담교) .....	99
거창군 공고 제2024-740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103
거창군 공고 제2024-745호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106
거창군 공고 제2024-746호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124
거창군 공고 제2024-750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0
거창군 공고 제2024-751호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150
거창군 공고 제2024-756호	거창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분묘개장공고(2차) .....	167

<b>회 람</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4년 5월 14일

거창군 조례 제2864호

###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중전 제8호)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로 “승고”를 “높임”으로 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가. 침수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
- 나. 유실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 하천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
- 다. 고립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다리, 도로 등 마을로 진입·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
- 라. 취약방재시설지구: 저수지·댐, 제방, 배수문, 우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
- 마. 붕괴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바. 상습가뭄재해지구: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

제4조 및 제5조 중 “안”을 “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침수위험지구 등”을 “침수위험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붕괴위험지구”를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및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침수위험지구 등”을 “침수위험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승고”를 “높임”으로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를 “다만, 대지를 높임으로써”로 “승고 전후의 우수”를 “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종이”를 “공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종전 제8조)제1항제1호 중 “직·간접”을 “직간접”으로 “안”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간접”을 “직간접”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다리, 잠수교, 지하 관로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다리, 잠수교, 지하 관로 등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취약

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  
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  
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  
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  
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  
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2조(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상습  
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  
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  
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  
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  
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  
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p>	<p><u>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p> <p>가. 침수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p> <p>나. 유실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 하천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p> <p>다. 고립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다리, 도로 등 마을로 진입·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p> <p>라. 취약방재시설지구: 저수지·댐, 제방, 배수문, 우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p> <p>마. 붕괴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p> <p>바. 상습가뭄재해지구: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p>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

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6.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

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를 높임으로써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1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

- 을 해소할 수 있는 공중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신 설>

- 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다리, 잠수교, 지하 관로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다리, 잠수교, 지하 관로 등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신 설>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신 설>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신 설>

제12조(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별표 1] 침수위험지구의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b></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문의(거창군청, T. 055-940-0000) 거창군수</p> </div>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10px;"> <div style="margin-right: 10px;"> <p>침수위선(적색) →</p> </div>  <div style="margin-left: 10px;"> <p>문자로 침수위선 표기</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p>침수흔적(청색삼각형)</p> </div>  <div style="margin-left: 10px;"> <p>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p> </div>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안내판(어두운 노랑)</li> <li>나. 글씨(검정)</li> <li>다. 침수위선(빨강)</li> </ul> </li> <li>2. 안내판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가로 1.2m</li> <li>나. 세로 1m 내외</li> </ul> </li> <li>3.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li> <li>4.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안내판(어두운 노랑),</li> <li>나. 글씨(검정)</li> <li>다. 침수위선(빨강)</li> <li>라.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으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li> </ul> </li> <li>5.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li> <li>6.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li> <li>7.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예: ▶ 태풍루사, 2002)</li> <li>8.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li> <li>9.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li> </ol>

[별표 2] 붕괴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b>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b></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문의(거창군청, T. 055-940-0000) 거창군수</p> </div> </div>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내판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가로 1.2m</li> <li>나. 세로 1m 내외</li> </ul> </li> <li>2.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li> <li>3.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안내판(어두운 노랑)</li> <li>나. 글씨(검정)</li> <li>다.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li> <li>라. 기둥은 노랑색으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li> </ul> </li> <li>4.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li> <li>5.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li> <li>6.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li> </ol>

#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4-42
----------	---------

제출연월일	2024. 4. 5.
제출자	거창군수

## 1. 제안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유형이 7개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형별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에 대한 상세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유형 확대(안 제3조)

1) 현행: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2) 신설: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나.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별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내용 신설함(안 제8조~제10조, 제12조)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정비(안 별표 1, 별표 2)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3. 5.~3. 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4년 5월 14일

거창군 조례 제2865호

###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휴양과 산림레포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레포츠파크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이하 “산림레포츠파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
2. 마운틴코스터

② 산림레포츠파크는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099-35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개관) ① 산림레포츠파크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등의 숙박시설
2. 생태놀이터 등의 체험·교육시설
3. 오토캠핑장,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운영사무실
4. 마운틴코스터 등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

② 산림레포츠파크는 규칙으로 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제4조(이용 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 및 체험하려는 사람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그 이용 등을 승인한다.

**제5조(이용료)** ① 군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료는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책, 시설 및 산림레포츠파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제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이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산림레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산림레포츠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산림레포츠파크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제5조 관련)

시설명	구분		이용기준	이용료	
				성수기	비수기
1. 주차장	가. 승용차, 승차인원 15명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30분	500원 (10분 초과당 200원)	
			1일	5,000원	
	나. 승차인원 16명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		30분	1,000원 (10분 초과당 400원)	
			1일	10,000원	
2. 오토캠핑장	가. 데크형	대형	1일	70,000원	56,000원
		일반형	1일	40,000원	32,000원
	나. 자갈형		1일	40,000원	32,000원
3. 숙박시설	가. 산림휴양관	5인 / 1실	1일	120,000원	96,000원
	나. 숲속의집	6인 / 1실	1일	180,000원	144,000원
4.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	가. 짚코스터		1회	15,000원	
	나. 로프어드벤처		1회	15,000원	
	다. 등반체험시설		1회	10,000원	
	라. 트리탑		1회	5,000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통합 이용권		1회	35,000원	
	바. 마운틴코스터		1회	20,000원	

[비고]

1. 시설을 위탁 또는 사용허가 중인 경우,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 기준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 징수할 수 있다.
2. 1회 주차 시 누적 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3. 오토캠핑장, 숙박시설,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할 경우 주차장 이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별표 2] 이용료의 감경기준(제6조 관련)

시설	대상	감경률(이용료에 대한 백분율)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트리탑 및 마운틴코스터	가. 국가보훈대상자	100분의 50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다자녀가정	100분의 30
	마. 거창군민	
	바. 산림레포츠파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사. 청소년	100분의 20
아. 단체		
<p>[비고]</p> <p>1. 이용료 감경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감경률이 큰 것을 적용한다.</p> <p>2. 이용료 감경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별표 3] 이용료의 반환기준(제7조 관련)

사유	기준	반환율(이용료에 대한 백분율)
1.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	가. 이용예약일 5일 전까지 또는 탑승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	100분의 100
	나. 이용예약일 3일 전까지 취소	100분의 90
	다. 이용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	100분의 70
	라. 이용예약일 그날 또는 탑승시간 1시간 전~탑승 시간 전 취소	100분의 50
	마. 이용예약일 그날 또는 탑승시간 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 없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산림레포츠 파크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
3. 산림레포츠 파크의 사정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운영·관리 비용
- 나. 관련 조문: 산림레포츠파크의 설치 등(안 제2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군비	1,086	1,108	1,130	1,152	1,176	5,652

※ 최근 5년 평균 물가상승률 2퍼센트 반영

## 3. 관련 의견

레저와 휴양이 공존하는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 필요함

## 4. 비용추계 요약: 2024년도 예산

- 가. 인건비: 838백만원
- 나. 운영경비(보험료, 수선유지비, 제세공과금 등): 186백만원
- 다. 일반관리비: 62백만원

작성자 산림과장 신종호

#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안 번호	2024-43
----------	---------

제출연월일	2024. 4. 5.
제출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조성된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과 모험·체험을 위한 산림레포츠시설을 아우르는 거창 산림레포츠파크를 설치·운영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나. 시설 및 개관을 정함(안 제3조)
- 다. 이용 신청 등을 정함(안 제4조)
- 라.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반환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별표 1~별표 3)
- 마. 위탁운영을 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지방자치법」 제161조
-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1,086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3. 22.~4.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4년 5월 14일

거창군 조례 제2866호

###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를 삭제한다.

제5조 조 제목 “(설치기준)”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 여건 및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

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8조 조 제목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을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제공)”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두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을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

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조 제목“(관리비 등 지원)”을“(개방화장실의 관리비 등 지원)”으로 한다.

제14조 앞에“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를 삭제한다.

제15조 조 제목“(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감안한”을“고려하여”로“설치하여야 한다.”를“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남자용과 여자용”을“남성용과 여성용”으로“설치하여야 한다.”를“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제4호 중“설치하여야 한다.”를“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지정하여야 한다.”를“지정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를“청결을 유지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소독하여야 한다.”를“소독할 것”으로 하며“비치·제공하여야 한다.”를“갖춰두고 제공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때”를“경우”로 한다.

제16조 앞에“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를 삭제한다.

제6장(제18조·제19조)을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b>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b></p> <p><b>제1장 총칙</b>  <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적용범위)</b>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에 설치한 화장실</li> <li>2. 법 제3조제16호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 및 시설에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li> <li>3.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시설과 군수가 공중화장실 등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li> </ol> <p><b>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b>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거창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b></p> <p style="text-align: center;"><b>&lt;삭 제&gt;</b></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적용범위)</b>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p> <p><b>제4조(군수의 책무 등)</b>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p>

제2장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함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3. 필요할 경우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6. 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음

<신 설>

<신 설>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삭 제>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함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3. 필요할 경우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삭 제>

<삭 제>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 여건 및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군수가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군수가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춰두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 <삭 제>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화장실 관리비 일부 또는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2. 군수가 시설노후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

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관리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화장실 관리비 일부 또는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2. 군수가 시설노후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삭 제>**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

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두고 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전경 사진</p>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 구분				설 치 연 도			관 리 책 임  공 무 원	소속				
설 치 및 관 리  주 체	설치 주체							직급				
	설치 관리 주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계	남	여		
규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그 밖 에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액 (천원)			
<신 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요인: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운영 비용
- 나. 관련조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안 제5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작성자 환경과장 김성남

#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4-44
----------	---------

제출연월일	2024. 4. 5.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 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그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임형식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제3조)
- 나.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 신설함(안 제5조)
- 다. 법령 등 중복·재기재 삭제(현행 제5조제5호·제6호,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제19조)
- 라.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함(현행 제18조, 별표)
  - 1) 이유: 군수의 재량권 침해
  - 2) 입법형식 변경: 규칙으로 부과기준 정함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1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확보 예정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3. 5.~4.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구분항목 신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4년 5월 14일

거창군 조례 제2867호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의 조 제목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태양광 발전시설”을 “발전시설”로 한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p> <p>② (생략)</p>	<p>제20조의3(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23]

##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1.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1.5미터 이상 울타리(웁스, 차폐수 등)를 설치하고, 울타리와 태양광 발전시설 사이에 2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완충공간을 확보 할 것.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울타리 높이는 1미터 이상, 이격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3.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발전용량(킬로와트)	나. 도로에서 직선 거리(미터)	다. 주거밀집지역이나 관광지 경계에서 직선거리(미터)
300 미만	200	300
300 이상 600 미만		400
600 이상 1,000 미만		500
1,000 이상		600

<신 설>

4. 풍력 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계에서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반경 2킬로미터 이내 주민의 80퍼센트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분	풍력발전기 (미터)	154kV 이상 송전선로 (미터)
가. 주거밀집지역 또는 관광지	<u>2,000</u>	<u>1,500</u>
나.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		
다. 5호 미만 주거지역 또는 축사	<u>1,500</u>	<u>1,000</u>

비고

- 1) “발전용량”이란 연접한 부지 30미터 이내에 태양광발전시설 발전허가를 받고 시행계획이거나, 개발행위준공 1년 이내 또는 시행중인 발전시설을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
- 2) “도로”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 3)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와 가구 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 4)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시설부지를 말한다.
- 5)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이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전통 사찰 등 조용하고 평온한 주변환경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신 설>
- 6) “축사”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신 설>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제출 의견	제출인	처리 결과							
<p>이격거리 기준에 주민참여형 사업(전체사업비의 4% 지분참여) 및 60%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하는 사업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하는 단서 조항 추가</p>	<p>곽*근 등 2명</p>	<p>일부 반영</p>							
<p>○ 이격거리 확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풍력발전기 (미터)</th> </tr> </thead> <tbody> <tr> <td>가.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지</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500 → 3,000</td> </tr> <tr> <td>나.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td> </tr> <tr> <td>다. 5호 미만 주거지역 이나 축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 → 2,000</td> </tr> </tbody> </table>	구 분	풍력발전기 (미터)	가.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지	1,500 → 3,000	나.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	다. 5호 미만 주거지역 이나 축사	1,000 → 2,000	<p>정*호 등 4명</p>	<p>미반영</p>
구 분	풍력발전기 (미터)								
가.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지	1,500 → 3,000								
나.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									
다. 5호 미만 주거지역 이나 축사	1,000 → 2,000								
<p>○ 이격거리 확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풍력발전기 (미터)</th> </tr> </thead> <tbody> <tr> <td>가.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지</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500 → 2,000</td> </tr> <tr> <td>나.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td> </tr> <tr> <td>다. 5호 미만 주거지역 이나 축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 → 1,500</td> </tr> </tbody> </table>	구 분	풍력발전기 (미터)	가.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지	1,500 → 2,000	나.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	다. 5호 미만 주거지역 이나 축사	1,000 → 1,500	<p>신*범 등 39명</p>	<p>반영</p>
구 분	풍력발전기 (미터)								
가.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지	1,500 → 2,000								
나.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									
다. 5호 미만 주거지역 이나 축사	1,000 → 1,500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28
----------	---------

발의일자	2024. 4. 5.
발의자	표주숙,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신미정

### 1. 제안 이유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만 규정되어 있던 현행 조례에 발전시설의 대상을 확대해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거리규정을 둠으로써 사업 시행 측과 행복추구권을 바라는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함

### 2. 주요내용

- 가. 현행 ‘태양광 발전시설’로만 한정되어 있던 조 제목을 ‘발전시설’로 확대함(안 제20조의3)
- 나. 풍력발전시설과 154kV 이상 송전선로에 대한 이격거리 신설함(안 별표 23 제4호)
- 다. 이격거리의 기준이 되는 시설을 정의함(안 별표23 비고 5) 및 6))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도시건축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3. 8.~3. 12.
    - 나) 예고결과: 의견 있음(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4년 5월 14일

거창군 조례 제2868호

###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군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5.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4조 중 “모든 군민”을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제5조·제6조)을 삭제한다.

제7조 앞에 “제3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때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앞에 “제4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공영자전거 그린씽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그린씽(이하 “그린씽”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그린씽 이용 대상은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그린씽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의2(그린씽의 기준 및 이용료)** ① 그린씽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지역은 군내로 함

2. 그린씽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그린씽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보관해야 함

② 그린씽의 이용 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그 밖에 그린씽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의3(그린씽의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린씽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2. 그린씽 및 관련 시설물의 점검·보수 등을 할 경우

제13조의4(그린씽의 무료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씽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그린씽을 활용하는 경우
2.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회원

제14조의 제목 중 “군민자전거”를 “그린씽”으로 하고, 본문 중 “군민자전거”를 “그린씽”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운영·관리의 위탁)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그린씽 및 그린씽 전용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제30조·제31조)을 삭제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그린씽의 무료이용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4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연회원권, 월회원권을 구매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장 총칙</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군민자전거</u>”란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u></p> <p>2. “<u>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u>”이란 <u>군민 자전거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u></p> <p>제3조(군의 책무) <u>군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p> <p>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p> <p>4. 자전거 명품도시 창조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p> <p>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u>모든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u></p> <p>1.~4. (생략)</p> <p>제2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제3조(군수의 책무)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u></p> <p>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p> <p>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p> <p>4. 자전거 명품도시 창조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p> <p>5. <u>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u></p> <p>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p> <p>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u>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u></p> <p>1.~4.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삭 제>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 2. 연도별 활성화계획
-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 4. 그 밖에 영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삭 제>

군수는 활성화계획에 관하여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삭 제>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 ① 군수는 법 제11조와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

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신 설>

제4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제13조(군민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자전거의 이용 가능
2. 군민자전거의 이용지역은 군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군민자전거는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보관할 것
4. 군민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그의 귀책사유로 군민자전거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할 것

③ 군수는 군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그 밖에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장을 설치할 때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공영자전거 그린씽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그린씽(이하 “그린씽”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그린씽 이용 대상은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그린씽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의2(그린씽의 이용기준 및 이용료) ① 그린씽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이용 지역은 군내로 함
2. 그린씽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그린씽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보관해야 함

② 그린씽의 이용 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그 밖에 그린씽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그린씽의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린씽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2. 그린씽 및 관련 시설물의 점검·보수 등을 할 경우

<신 설>

제13조의4(그린씽의 무료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씽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그린씽을 활용하는 경우
2.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회원

제14조(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군민들이 군민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장소 외에 공원, 하천, 여객터미널, 버스승강장, 공공시설 등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장소에 대하여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4조(그린씽 전용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군민들이 그린씽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장소 외에 공원, 하천, 여객터미널, 버스승강장, 공공시설 등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장소에 대하여 그린씽 전용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운영·관리의 위탁)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그린씽 및 그린씽 전용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제6장 보칙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전거주차장·군민자전거·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를 그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여하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그린씽 사용료(제13조제3항 관련)

구분		회원	비회원	비고
기본 사용료 (3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권 : 20,000원</li> <li>▪30일권: 3,0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일권: 1,000원</li> </ul>	<p>○기본 사용료의 사용시간 범위에서 반복이용은 가능하다. 이 경우 별도의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p> <p>○추가 사용료의 산정에 있어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추가 사용료	3시간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당 5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당 1,000원</li> </ul>	

※ “회원”이란 그린씽을 사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그린씽 사용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29
----------	---------

발의일자	2024. 4. 5.
발 의 자	신재화,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신미정

## 1. 제안 이유

현행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화 했으며, 청소년들이 그린썩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나. 공영자전거 그린썩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다. 그린썩의 기준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2)
- 라. 그린썩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3)
- 마. 그린썩의 무료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4)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도시건축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3. 26.~4. 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4년 5월 14일

거창군 조례 제2869호

###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활성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 4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위촉”을 “위촉 또는 공개채용”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관리 및 지원)**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1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안전·이익을 보장하고,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문화, 예술,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면제 대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2. 사업추진협의회
3. 주민협의체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1조의3(공동이용시설의 위탁)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 등에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공동이용시설)</b>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li> <li>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li> <li>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 <u>&lt;신 설&gt;</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공동이용시설)</b>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li> <li>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li> <li>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li> <li>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li> <li>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li> </ol>
<p><b>제3조(도시재생위원회)</b> 「거창군 계획조례」 따른 거창군 계획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p>	<p><b>제3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b>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p>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거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거창군과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신 설>

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거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공개채용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거창군과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관리 및 지원)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

제11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안전·이익을 보장하고,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문화, 예술,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면제 대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2. 사업추진협의회

3. 주민협의체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신 설>

제11조의3(공동이용시설의 위탁)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 등에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 제12조(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건폐율 이내로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 <삭 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도시재생사업 지원

나. 관련 조문: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관리 및 지원(안 제10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4)	2차연도 (2025)	3차연도 (2026)	4차연도 (2027)	5차연도 (2028)	합계
군비	50	50	50	50	50	250

### 3. 관련 의견

보조금 지원으로 지속적인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주민참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1) 2024년도 예산 50백만원

2) 주민이 스스로 제안·참여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직무대리 박경순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4-45
----------	---------

제출연월일	2024. 4. 5.
제출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확대 등을 정함(안 제2조·제11조의2·제11조의3)

- 1) 범위 확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그 밖에 유사한 시설
- 2) 법령위임사항 신설: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 3) 위탁 근거 신설

### 나. 군 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 선임방법을 확대함(안 제5조)

- 1) 군수가 위촉 ⇒ 위촉 또는 공개채용

### 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관리 및 지원을 신설함(안 제10조)

- 1) 사후관리 계획 수립
- 2) 완료지역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 마. 법령개정사항 등 정비함

#### 1) 법령 개정사항 반영

가)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 삭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현행 제12조)

#### 2) 법령·조례의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현행 제10조·제13조)

가)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 절차 등

나) 시행규칙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조·제30조의2·제32조
-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0조·제39조제1항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50백만원 확보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3. 12.~4. 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4년 5월 14일

거창군 조례 제2870호

###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 단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3.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 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4. 농업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국외 연수
5.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우수사례 홍보
6. 4에이치 정보지 보급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통보 등을 받은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통보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거창군 4에이치 육성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기준에 확보한 예산(44,800천원)을 통해 거창군 4에이치  
활동지원

작성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30
----------	---------

발의일자	2024. 4. 5.
발 의 자	김향란,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신미정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거창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4에이치육성’에서 ‘4에이치활동’으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다.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 라. 지원계획 수립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마. 지원 사업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제5조,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농업축산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3. 27.~4. 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4년 5월 14일

거창군 규칙 제1394호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4. 경제복지국 문화관광과란 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	분장사무
문화관광과	23.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정책, <u>문화유산</u> , 박물관, 수승대에 관한 업무

###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4-32
----------	---------

제출연월일	2024. 4. 22.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2024. 5. 17. 시행)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문화재담당을 문화유산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담당명칭 변경

- 1) 문화재 ⇒ 문화유산(안 별표 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3. 18.~4. 7.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4년 5월 14일

거창군 규칙 제1395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5의2 제1호 중 전산 직렬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데이터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별표 7의4 가목 중 사회복지 직렬 다음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허적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전산	전산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멀티미디어 콘 텐츠 제작 전 문가
	데이터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별표 4, 별표 5의3,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6조의2(응시수수료)</b> ① 영 제6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li> <li>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li> <li>3. 8급·9급공무원 : 5천원</li> </ol> <p>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u></p>	<p><b>제6조의2(응시수수료)</b> ① 영 제6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li> <li>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li> <li>3. 8급·9급공무원 : 5천원</li> </ol> <p>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li> <li>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li> <li>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li> <li>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li> </ol>
<p><b>제8조(응시연령)</b>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p>	<p><b>제8조(응시연령)</b>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p>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직렬	계급		5급이상	6급·7급	8급·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삭제>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2급 정사서
속기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의	수의	수의	수의사	수의사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무	치과의사			
약무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제				
간호	간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부터 2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2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b>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b> 항해사 1급부터 4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4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부터 6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6급까지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부터 2급까지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b>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b> 항해사 1급부터 4급까지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부터 6급까지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 1급부터 2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b>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b> 기관사 1급부터 4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 1급부터 6급까지	

직렬	계급		5급이상	6급·7급	8급·9급
	직류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b>산업기사(항공)</b>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b>자가용조종사</b>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b>자가용조종사</b>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b>산업기사(항공)</b>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b>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 ) 기사(지적, <b>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 ) <b>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	기술사(지적, <b>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 ) 기사(지적, <b>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 ) <b>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 <b>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b>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b>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b>	조리기능장 <b>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b> <b>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b>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 제 임기 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 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b>고등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b>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b>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b>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b>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b>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b>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b>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임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b>졸업자등</b>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b>졸업자등</b>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b>졸업자등</b>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천연색 사진  
(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같은 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4-31
----------	---------

제출연월일	2024. 4. 22.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제안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등 국가직 인사제도 개선함에 따라 국가직과의 균형을 위해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함(안 제6조의2)

-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나.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안 제8조)

(현행) 20세 이상 ⇒ (변경) 18세 이상

#### 다. 특수직급의 응시자격증 정비함(안 별표 4)

- 1) 전산직렬: 응시자격 제한의 필요성이 낮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 ⇒ 가산자격증으로 전환
- 2) 해양수산직렬, 항공직렬, 시설직렬, 조리직렬 등: 필수자격증 추가

#### 라. 경력경쟁채용 전산직렬에 응시자격증 추가함(안 별표 5의2)

- 1) 기사(빅데이터분석),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마. 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함(안 별표 5의3)

- 1)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졸업자등)

#### 바.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함(안 별표 5의3)

- 1) 민간 경력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에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응시요건 명확화
- 2)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에 대해서는 관리자 근무 경력 폐지

사.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 신설함(안 별표 7의4)

1) 특수직급 응시자격증에서 전산직렬을 삭제함에 따라 신설

아. 용어 순화함(안 별지 제3호서식)

1) 탈모 ⇒ 모자 등을 쓰지 않은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3. 18.~4. 7.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4년 5월 14일

거창군 규칙 제1396호

###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차량 집중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부서 내 회계 업무 담당을 집중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담당자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담당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조 제목 “(차량 관리방법)”을 “(차량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부서는”을 “관리담당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2.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3.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4. 운전원 복무 관리
5. 그 밖에 차량 운영관리 전반

② 차량관리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관련 예산은 집중관리담당에게서 일괄 반영하여 집행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제4호는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를 제5호·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

4.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에 대한 게시 여부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u>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 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p> <p><u>② 제1항에 따라</u>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p> <p><u>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u> 차량관리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p> <p><u>②</u>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 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p> <p><u>③</u>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 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p> <p><u>④</u>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u>제27조(지도·점검 등) ①</u>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부서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u>②</u> 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u>제20조(차량 집중관리담당 지정) ①</u>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부서 내 회계업무 담당을 집중관리담당으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p> <p><u>②</u>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담당은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담당을 지정할 수 있다.</p> <p><u>제21조(차량 관리) ①</u>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li> <li>2.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li> <li>3. 차량의 점검·정비·수리</li> <li>4. 운전원 복무 관리</li> <li>5. 그 밖에 차량 운영관리 전반</li> </ol> <p><u>②</u> 차량관리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관련 예산은 집중관리담당에서 일괄 반영하여 집행한다.</p> <p><u>③</u>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담당은 해당 차량의 배차 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p> <p><u>④</u>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u>제27조(지도·점검 등) ①</u>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부서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제4호는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한다.</p> <p><u>②</u> 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차량정수 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 관리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u>3.</u> 제2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p> <p><u>4.</u>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p>	<p>1. 차량정수 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 관리사항</p> <p><u>3.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u></p> <p><u>4.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에 대한 게시 여부</u></p> <p><u>5.</u> 제2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p> <p><u>6.</u>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p>
---	--

##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4-22
----------	---------

제출연월일	2024. 4. 3.
제 출 자	재무과장

###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대한 실태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의무를 명시하여 공용차량 운전자와 군민의 안전을 높이고 사고 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함(안 제20조)

나.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를 신설함

1) 차량관리부서의 장의 업무에 신설(안 제21조)

2)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지도·점검 사항에 신설(안 제27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3. 4.~3. 2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4년 5월 14일

거창군 규칙 제1397호

###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이하 “산림레포츠파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산림레포츠파크 활성화와 이용 편의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질코스터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 또는 변경 휴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운영시간 등) ① 산림레포츠파크 및 시설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1. 산림레포츠파크: 9시부터 18시까지
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그날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3.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트리탑, 마운틴코스터  
가. 11월부터 3월까지: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  
나. 4월부터 10월까지: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제4조(이용료의 산정기준)**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금요일·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
2.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함

**제5조(이용료의 감면기준)** ① 조례 별표 1에 따른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 중 하나 이상 이용한 경우에 트리탑은 무료로 한다.

② 조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거창군민인 수급자를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거창군민이면서 24세 이하인 자녀를 둘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③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24-25
----------	---------

제출연월일	2024. 4. 3.
제 출 자	산림과장

## 1. 제안이유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의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등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나. 이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4조)
- 다. 이용료의 감면기준을 정함(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3. 22.~4.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4년 5월 14일

거창군 규칙 제1398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근거조항	부과금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5	10	20

#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의안 번호	2024-33
----------	---------

제출일자	2024. 4. 22.
제 출 자	환경과장

##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조, 별표)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3. 21.~4. 1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실행계획 변경(2차) 고시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92번지 일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실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거창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실행계획(2차)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거창군수

##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개요

개요 및 범위	사업명	사업유형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상동 아름드리 숲골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인정사업	68.25억원	2021년~2024년
	사업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92번지 일원	사업면적	1,187㎡
사업시행자	거창군			
사업 필요성	쇠퇴한 원도심 지역으로 평가받는 상동마을에 복합 커뮤니티 거점 공간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회복 달성			
사업내용 및 효과	고령화지수가 높은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재원조달방안	국비 39.18억원, 지방비 26.12억원, 자체지방비 2.95억원			
활성화계획도				

### :: 거창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 사업개요**

- 사업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92번지 일원 (1,187㎡)
- 사업 기간 : 2021년~2024년 12월 (4년)
- 총 사업비 : 68.25억원 (국비 39.18억원, 지방비 26.12억원, 자체지방비 2.95억원)
- 사업 규모 : 지상4층 (건축면적 363.25㎡, 연면적 1,127.39㎡)
- 주요 사업 :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 주차공간 및 생활시설
- 생활SOC 복합 공급 /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 사업위치도**

**▶ 세부사업 내용**

**1. 숲골 어울림센터 조성**

구분	내 용
목 표	- 주민 공동체 활동 거점 시설 조성
사업위치	- 거창읍 상림리 92, 95-1, 95-1, 95-3(4필지)
사업규모	- 지상4층 (건축면적 363.25㎡, 연면적 1,127.39㎡)
공간구성	- 숲골카페, 공동육아놀이체험실, 건강증진실, 경로당 등
사업비	- 4,465백만원 (도시재생 재정보조 6,170, 자체지방비 295)

**2. 숲골 문화프로그램 운영**

구분	내 용
목 표	-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프로그램 도입
사업위치	- 숲골 어울림센터(운영공간 : 마을회관 등)
사업규모	- 숲골문화프로그램(운영공간 : 숲골마을, 숲골 바리스타 양성 교육)
사업비	- 360백만원(도시재생 재정보조 360)

**▶ 숲골 어울림센터 평면도**

1층 평면도

주요공간 : 숲골카페 등

2층 평면도

주요공간 : 공동육아놀이체험실 등

3층 평면도

주요공간 : 문화교실, 건강증진실 등

4층 평면도

주요공간 : 경로당 등

옥상 평면도

주요공간 : 옥상정원 등

※ 위 활성화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② 계획의 목표

비전	원도심 내 주민복합센터를 조성하여 생활 SOC 공급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쇠퇴한 원도심 지역으로 평가받는 상동마을에 복합 커뮤니티 거점공간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회복 달성</li> <li>- 본 사업을 통하여 타 지역 대비 높은 장년, 노년인구의 비율이 높은 특수성과 열악한 주차여건을 개선하고자 함</li> </ul>

## ③ 주요변경사항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

- 당초 : 대지면적 874m<sup>2</sup>, 건축면적 520m<sup>2</sup>, 연면적 1,500m<sup>2</sup>

- 변경 : 대지면적 1,184m<sup>2</sup>, 건축면적 363.25m<sup>2</sup>, 연면적 1,127.39m<sup>2</sup>

○ 건축물 층수 증가 및 공간배치 조정

구분	당초		변경	
	기능	면적(m <sup>2</sup> )	기능	면적(m <sup>2</sup> )
1층	숲골카페(작은도서관)	140.00	숲골카페(작은도서관)	116.96
	경로당	205.00	-	-
	커뮤니티룸	18.00	-	-
	공용공간	157.00	공용공간	92.21
	소계	520.00	소계	209.17
2층	숲골문화교실	148.50	공동육아놀이체험실	199.11
	건강증진실 및 헬스케어	108.00	마을회관(커뮤니티룸)	94.77
	공용공간	233.50	공용공간	56.26
	소계	490.00	소계	350.14
3층	공동육아놀이체험실	207.00	숲골문화교실	53.17
	육아쉼터	56.00	다목적강당(건강증진실)	64.97
			헬스장(헬스케어)	85.43
	공용공간	227.00	공용공간	89.49
	소계	490.00	소계	293.06
4층	-	-	경로당	190.12
	-	-	공용공간	84.90
	소계	-	소계	275.02
합계	기능 면적	882.50	기능 면적	804.53
	공용공간 면적	617.50	공용공간	322.86
	총계	1,500.00	총계	1,127.39
PH	옥상정원		옥상정원	
옥외	주차장 8면		주차장 16면	

○ 사업기간 변경

- 당초: 2021. 1. ~ 2024. 6.

- 변경: 2021. 1. ~ 2024. 12.

○ 사업비 변경

1) 지자체 : 경상남도 거창군

2) 사업유형 : 인정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변경 전 (최종고시)	예산	변경 후 (금회 변경)	예산	예산 증감	변경/보완 사유	비고												
계	-	6,530	-	6,825	295	· 자체지방비 투입으로 사업비 증가													
변경	a-1 숲골 어울림센터 조성	6,170	a-1 숲골 어울림센터 조성	6,465	295	· 민원해소를 위한 건축선 조정으로 건축 제외면적 발생으로 건축면적, 연면적 감소 · 거점시설 공동체 활동공간 (주차장, 소공원) 추가조성 (단위 : m <sup>2</sup> )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당초</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대지면적</td> <td>874</td> <td>1,187</td> </tr> <tr> <td>건축면적</td> <td>520</td> <td>363.25</td> </tr> <tr> <td>연면적</td> <td>1,500</td> <td>1,127.39</td> </tr> </tbody> </table>	구분	당초	변경	대지면적	874	1,187	건축면적	520	363.25	연면적	1,500	1,127.39	면적 및 공간 배치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대지면적	874	1,187																	
건축면적	520	363.25																	
연면적	1,500	1,127.39																	
(1) 숲골 어울림센터 조성 · 부지매입비 306 · 건물보상비 134 · 시설조성비 5,040 - 공동이용공간 - 태양광 발전시설 - 소공원 - 친환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 조성 · 설계사업관리 690	(1) 숲골 어울림센터 조성 · 부지매입비 800 · 건물보상비 217 · 시설조성비 5,009 - 공동이용공간 - 태양광 발전시설 - 소공원 - 친환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 조성 - 운영기자재 구입 · 설계사업관리 439	295 494 83 △31	△251																
유지	a-2 숲골 문화프로그램	360	a-2 숲골 문화프로그램	360	-	· 변경없음	유지												
	(1) 숲골 문화프로그램 · 인문학, 노인교실, 건강증진 등 문화프로그램 1식 300	300	(1) 숲골 문화프로그램 · 인문학, 노인교실, 건강증진 등 문화프로그램 1식	300	-														
	(2) 숲골 바리스타 양성 교육 · 강사료, 장소임대비 등 재료비 · 워크숍 및 카페 운영 건학 60	60	(2) 숲골 바리스타 양성 교육 · 강사료, 장소임대비 등 재료비 · 워크숍 및 카페 운영 건학	60	-														

4 도시재생관련 서류 열람

○ 열람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64)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9일

거 창 군 수

### 1. 목적

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조사 및 위험도 평가 결과 반영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하고자 함.

### 2.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대상 : [붙임1] 참조

### 3. 행정예고

가. 열람공고 기간 : 2024. 5. 9. ~ 2024. 5. 31.

나.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건설담당(☎ 055-940-3533)

다. 근 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5. 9. ~ 2024. 5. 31.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다. 제 출 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층, 건설교통과

라. 내 용 :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붙임 2]

## 5. 기타 안내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건설교통과(☎ 055-940-353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붙임 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대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예정 대상

연 번	시설명칭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사업량		정비 계획	비 고
	구분	명칭					연장 (L)	폭 (m)		
1	소교 량	음지담교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873-4	20	5	24년 이후	

※ 사업 시기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붙임 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시설명칭	시설물 명칭
		시설물 주소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9일

### 거창군수

#### 1.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사업시행 개요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시행규모	최초 결정일	사업기간	비고
		읍	리				
교통시설 :주차장	24	위천	황산	○주차장 신설 A=3,675㎡	거창군 고시 제2024-16호 (2024. 2. 6.)	2024. 5. ~ 2024. 12.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 나. 명칭 : 수승대 출렁다리(강정모리) 주차장 조성공사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거창군수
- 나.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거창군청)

4.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055-940-3584)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 7. 의견제출 및 열람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20,074	3,675					
1	위천면 황산리	산6-5	도	3,125	129		경상남도			국
2	"	904	구	12,304	160		국(농수산부)			국
3	"	835-4	도	302	290		경상남도			국
4	"	834	도	385	385		경상남도			국
5	"	835-2	도	1,895	1,895		경상남도			국
6	"	836-3	도	323	323		경상남도			국
7	"	836-6	도	464	339		거창군			
8	"	836-2	도	1,084	43	위천면 황산리	신** 외 4인			
9	"	835-1	도	192	111	위천면 황산리	신** 외 9인			

##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규칙」

2. 제정 이유

- 거창군 어르신에게 농어촌버스 이용요금의 전부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어르신, 버스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정함(안 제4조)
- 지원 요건을 정함(안 제5조)
- 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을 정함(안 제6조)
- 교통카드 이용실태 조사를 정함(안 제7조)

#### 나.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 조례 시행규칙

-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교통카드의 신청 등을 정함(안 제2조)
- 교통카드의 발급 비용을 정함(안 제3조)
- 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을 정함(안 제4조)

4. 예고기간 : 2024. 5. 9.(목) ~ 5. 28.(화)

#### 5.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건설교통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건설교통과)

- 전화번호 : 055) 940-3383 / FAX : 055) 940-3528

####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규칙」 제정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례명 :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어르신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스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농어촌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② 군수는 버스 이용요금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4조(버스 이용요금 지원) 군수는 어르신에게 버스 이용요금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요건)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받으려는 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2.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됨

제6조(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 ① 버스 운송사업자는 청구서류를 갖추어서 버스 이용요금을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 이용요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비용을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7조(교통카드 이용실태 조사) 군수는 어르신에 대한 버스 이용요금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통카드 이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카.

####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4. 1.] [법률 제20316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4.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4.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정산보고서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의 경우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경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성격·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그 예외 기준과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그 예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4. 1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 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카드의 신청 등) ① 버스를 이용요금을 지원받으려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교통카드의 발급 비용) ① 교통카드의 최초 발급 비용은 거창군에서 부담한다.

② 분실 등의 사유로 교통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는 어르신이 실제 발급에 든 비용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실버로 부담한다.

제4조(교통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 ① 버스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

2. 제정 이유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거나 환승 할인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여 거창군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을 정함(안 제2조)
  - 대 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 사 업: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환승 할인, 공영버스 결손 보전 등을 위한 지원
- 차등 지원을 정함(안 제3조)

#### 나.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지원 신청 및 서식 등을 정함(안 제2조, 별지 서식)

#### 4. 예고기간 : 2024. 5. 9.(목) ~ 5. 28.(화)

#### 5.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건설교통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건설교통과)

- 전화번호 : 055) 940-3383 / FAX : 055) 940-3528

####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 제정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례명 :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4. 인접한 시·도 및 시·군 지역 간의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의 운임 할인과 관련된 사업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벽지노선(僻地路線) 등의 운행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
7.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공영버스의 결손 보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군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차등 지원)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또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가. 도로의 노면(路面)
  -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 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⑨ 국가 또는 시·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4. 1.] [법률 제20316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7.0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4. 인접한 둘 이상의 시·도 및 시·군 지역 간의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의 운임 할인과 관련된 사업
  5. 대중교통 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사업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군의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 등) ①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사업체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사업비	총사업비		원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원
자기자본액			원	자기자본 부담액		원
사업기간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붙임 서류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li> <li>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li> <li>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li> <li>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행 2024. 1. 1.] [행정안전부예규 제273호, 2023. 12. 21., 일부개정.]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다.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

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파크 내에 생활 체육 시설인 거창군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함에 따라 그 위치 및 이용 근거를 신설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다목적체육관을 신설함(안 별표 1, 별표 1의2)
- 체육시설의 명칭 등을 신설함(안 제2조, 별표 1)
- 약칭 표현 등 정비(안 제3조, 별표 1의2)

4. 일부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0. ~ 2024. 5. 28.

##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체육시설사업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1)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체육시설사업소
- 2) 전화번호 : 055)940-8732, FAX : 055)940-8729
- 3) 전자우편 : panpan55@korea.kr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례명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명칭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2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중전 별표 1) 중 시설명란 중 “거창군 체육관, 고제면 문화체육회관”을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거창군 체육관, 고제면 문화체육회관”으로 하고, 파크골프장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b>제3조(시설의 개방 및 운영)</b> ① 체육 시설은 규칙으로 정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p> <p>② <b>거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b>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 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p>1.~3. (생략)</p> <p>③·④ (생략)</p> <p><b>제11조(사용료)</b>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b>별표 1과</b> 같다.</p> <p>② (생략)</p>	<p><b>제2조(체육시설의 명칭 등) 거창군수</b> (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b>별표 1과</b> 같다.</p> <p><b>제3조(시설의 개방 및 운영)</b> ① 체육 시설은 규칙으로 정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p> <p>② <b>군수</b>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b>제11조(사용료)</b>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b>별표 1의2와</b> 같다.</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1] <신 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칭	위치
가. 스포츠파크 나. 국민체육센터 다.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라. 거창군 체육관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일원
마.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고제면 고제로 46
바. 그 밖의 체육시설	군수가 따로 정함

[별표 1의2]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체육시설

(단위: 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고
				평 일	공휴일	
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150,000	2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200,000	300,000	
	종합운동장 (트랙)			무료	무료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다목적구장	체육경기	“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씨름장 및 소규모공연장	체육경기		무료		
		소규모공연		무료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거창군 체육관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체육경기	1일 1회 8시간 이내	3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50,000	120,000		
골프연습장		월 사용료	70,000			
테니스장	회 원	월 사용료	7,000			
	비 회 원	일 사용료	4,000			
		월 사용료	20,000			
게이트볼장			무 료			
족구장			무 료			
궁도장			무 료			
농구장			무 료			
인라인스케이트장			무 료			
사격장			무 료			
그라운드골프장			무 료			

※ 전기(조명포함) 사용료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납부

## 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8호, 2023. 8. 8., 일부개정]

####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시행일: 2024. 8. 28.]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2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2021. 6. 9., 일부개정]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6. 25.>

##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2. 읍·면·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

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개정안)

[별표 1의2]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체육시설

(단위: 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고	
			평 일	공휴일		
스 포 츠 파 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150,000	2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200,000	300,000	
	종합운동장 (트랙)			무료	무료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다목적구장	체육경기	“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씨름장 및 소규모공연장	체육경기		무료		
소규모공연			무료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거창군 체육관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체육경기	1일 1회 8시간 이내	3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50,000	120,000		
골프연습장		월 사용료	70,000			
테니스장	회 원	월 사용료	7,000			
		일 사용료	4,000			
	비 회 원	월 사용료	20,000			
게이트볼장			무 료			
족구장			무 료			
궁도장			무 료			
농구장			무 료			
인라인스케이트장			무 료			
사격장			무 료			
그라운드골프장			무 료			

※ 전기(조명포함) 사용료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납부

2. (생략)

##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입법예고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로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파크골프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제1조~제2조)
-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제3조~제10조)
- 이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제11조~13조)
-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4조~제18조)

4. 조례 제정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0. ~ 2024. 5. 28.

##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체육시설사업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1)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체육시설사업소
- 2) 전화번호 : 055)940-8732, FAX : 055)940-8729
- 3) 전자우편 : panpan55@korea.kr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례명** :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크골프장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한다.

1.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2. 각종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

②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허가를 갈음하며, 연회원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 이용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이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거창군민을 우선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거창군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산하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최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 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 활동
5. 그 밖의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에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 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또는 폐기물은 수거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6조(시설 이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유지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 제6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군수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흡연·취사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 이용에 대해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8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이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9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 군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 시간 및 휴장) ① 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시 : 09:00 ~ 18:00
2. 하절기(6~8월) : 06:00 ~ 18:00
3. 동절기(11~2월) : 09:00 ~ 17:00

단, 야간조명이 있는 시설은 22시까지로 한다.

- ② 시설 개· 보수 및 잔디 보호 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매년 1월1일, 설날 및 추석당일 휴장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탁 운영 시에는 이용 시간 및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 36홀 이상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거창군체육회의 체육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자 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2. 「거창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제13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 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반환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이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일일 이용자는 이용 시작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만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연회원은 등록 후 7일 이내 요청 시에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 이용 중간에 이용을 취소할 때는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시설의 사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

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의 규모에 맞게 질서 관리 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요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내 이용자들의 경기 질서 유지나 주차장 교통질서 계도
2. 회원 가입 및 이용권 부착 여부 확인
3.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제15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 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체육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거창군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홀수	비 고
거창읍 파크골프장 1구장	거창읍 양평리 1141번지 일원	18홀	조명
거창읍 파크골프장 2구장	거창읍 양평리 1126번지 일원	18홀	조명
거창읍 파크골프장 3구장	거창읍 대평리 12번지 일원	9홀	
제2창포원 내 파크골프장	남하면 무릉리 505번지 일원	36홀	
주상면 파크골프장	주상면 도평리 1225번지 일원	9홀	
웅양면 파크골프장	웅양면 산포리 산261-43번지 일원	9홀	
고제면 파크골프장	고제면 봉계리 525-2번지 일원	9홀	
위천면(수승대) 파크골프장	위천면 상천리 527-6번지 일원	9홀	조명
신원면 파크골프장	신원면 과정리 944번지 일원	9홀	
가조면 파크골프장	가조면 일부리 1060-3번지 일원	9홀	조명
가북면 파크골프장	가북면 몽석리 1177-1번지 일원	9홀	

[별표 2]

거창군 파크골프장 시설 이용료(제11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거 창 군 민	군민 외(관외 거주자)	비 고
일일 이용자(개인)	2,000	5,000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이내
연 회원(개인)	120,000		
연 회원(단체)	60,000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거창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li> <li>2.“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50명 이상 회원 등록된 거창군 종목별 협회를 말한다.</li> <li>3. “일일 이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발권하여 입장한 자를 말한다.</li> <li>4.“연회원”이란 1년 단위의 회원을 말하며 연도 중에 연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시설의 이용 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 기간으로 한다.</li> <li>5. 연회원 모집은 군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정한다.</li> <li>6. 연도 중에 연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가입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 (십 원 단위 이하 절사)하여 이용료를 수납한다.(단, 단체가입은 예외로 한다.)</li> <li>7.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연회원만 적용) 예외로 한다.)</li> <li>9. 관외 주민 이용자는 일 50명 이하로 제한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li> <li>10. 그 밖에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li> </ol>		



[별지 제2호서식]

## 거창군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서

성명	(남, 여)	단체명	대표자
주소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창군 주소자 외 가입 불가)		
생년월일		연락처	
이용기간	20 년 월 ~ 월		
납부금액	금 원	납부확인	
20 년 월 일 상기인은 거창군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자 : (서명)			
거창군수 귀하			
<b>거창군 파크골프장 이용 기준</b>			
1. 연 회원증(스티커)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용 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내입니다.			
2. 납부한 이용료는 등록 후 7일 이내 요청 시에만 전액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사정으로 인한 등록 기간 연기는 불가합니다.			
4. 정기휴장일(매주 월요일 / 1월 1일 / 설날·추석날 / 잔디 보호기간)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5.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 자연재해 및 재난 등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인 : (인)			

※ 감면신청자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14조(사용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

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7.>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지방자치단체는 법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분묘개장공고(2차)

「거창 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2차) 해당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1. 분묘의 소재지 및 수량

소 재 지	수 량	비 고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03-1(임)	2기	-

2. 개장사유 : 거창 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내 편입

###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하여 개장 및 이장 처리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

4. 안치장소 : 거창공설공원묘지(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70번지)

5.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 제1차 공고 : 2024. 04. 03.~ 2024. 05. 12.(40일간)

- 제2차 공고 : 2024. 05. 13.~ 2024. 07. 01.(50일간)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의 40일 이후 개재

### 8. 신고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 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신고 및 연락처 : 경상남도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2)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위 공고로 같음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 거 창 군 수